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압류의 효력〉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06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배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6. 9. 4.
3. 회 부 일 : 2026.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 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

이므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률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인의 채권자(이하 “제3채권자”라 함)가 압류하더라도 압류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7조의2(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2호의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u>제2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이 없다.</u>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을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을 것
--	---

2. 검토의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¹⁾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²⁾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 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³⁾

3)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채권을 우선함으로써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관련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채권 및 제3채권자의 일반채권 간 우선순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개정안의 입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1

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